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0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 고	동해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5,078,690원 중 45,414,429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5,308,860원 중 1,636,881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7,960,640원 중 3,370,6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 동해시 A 일원에 연간 300만 톤의 석회석 저장 및 출하설비(이하 '이 사건 물류시설'이라 한다) 건설과 B 철거 및 신축,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은 우선 2009. 3. 15.까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2008. 12. 1. 부터 2010. 5. 31.까지로 하되, 위 허가완료가 연기되는 기간만큼 공사 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우선 81,950,000,000원으로 하되, 상세설계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완료 후 변경계약을 따로 체결하기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대우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 미리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확정 짓고, 2009. 1.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제반 인적 · 물적 시설을 준비시켰다. 그런데 2009. 1. 13.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동해시 D동 주민 E 외 1,644명이 관계기관에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약 30m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둔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이 사건 물류시설은 총 높이 약 64m의 사일로 6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하여 환경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대우건설은 이 사건 민원으로 제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위 지역 주민대표는 협의 끝에 2011. 6.경 원고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가 위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각 1,750,000,000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결과, 대우건설은 20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0. 19. 대우건설과 이 사건 민원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09. 3. 1.부터 2011. 6. 19.까지 발생한 대기비용을 2,609,770,000원으로 확정하고, 2012. 7. 24. 위와 같이 확정한 대기비용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02,858,696,36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012. 7. 24.자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류시설 등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12. 7. 24.자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물류시설에 해당하는 71,175,599,984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강원도지사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대기비용 중 이 사건 물류시설에 관한 부분인 1,930,185,890원(= 2,609,770,000원 - 항만청 청사 및 동해항중앙부두에 관한 679,584,108원,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과 이 사건 물류시설의 방음벽설치비용 및 건설폐기비용 1,417,442,920원을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5. 2. 10. 이 사건 쟁점비용, 방음벽설치비용 및 건설폐기비용 합계 3,347,628,810원(= 1,930,185,890원 + 1,417,442,920원)을 이 사건 물류시설에 관한 취득가격에 반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5,078,690원, 지방교육세 5,308,860원, 농어촌특별세 7,960,6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원고는 2015. 4.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3.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비용은 이 사건 민원으로 이 사건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급인인 대우건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이므로, 이는 이 사건 물류시설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또는 제4호 소정의 "제3호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쟁점비용이 비록 2012. 7. 24.자 변경계약상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용은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을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그 계약 형식을 이유로 그 비용을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비용을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비용의 약정 경위와 내용에 관한 사실인정

가) 대우건설은 2009. 1. 1.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준비하였음에도 이 사건 민원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인건비 등 대기비용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2010. 1. 27. 이 사건 쟁점비용 보상 시기 및 방법에 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2010. 3. 12. 재차 이 사건 쟁점비용 보상을 청구하였다. 대우건설은 원고의 2010. 3. 10.자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간접비 검토 요청건'에 대한 회신으로서 변경 계약금액에는 공사지연에 따른 이 사건 쟁점비용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31. 앞서 보았듯이 대우건설과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확정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다시 정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10. 4. 30. 대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 물류시설 조성공사에 한하여 공사대금을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Cost Plus Fee, 이하 '실비정산 보수가산식'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2010. 4. 30.자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4. 30.자 변경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대우건설은 ① 공사기간은 이 사건 시설 조성공사 착공 후 13개월로 정하되, 대우건설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만큼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제2조 제1호), ② 계약금액은 직접공사비, 경비, 제 경비, 이윤, 간접노무비 및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의 합산금액으로 정하며, ③ 여기서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이란 2009. 3. 1.부터 2010. 2. 15.까지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한 대우건설의 실무투입비용으로, 상세항목은 제반조건 B.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제3조 제6호), ④ 2009. 3. 1.부터 2010. 2. 15.까지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원고, 대우건설, 현대제철과의 합의 하에 2010. 5. 14.까지 확정하고, 원고와 대우건설의 변경계약 체결 후 기성금으로 이를 청구하고, 확정된 비용은 대우건설의 비용청구 후 익월 말 지급하기로(2010. 4. 30.자 변경계약에 첨부된 제반조건 B. 2.항) 약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다) 한편 대우건설이 위 가)항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쟁점비용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창고의 임대료, 안전관리비, 현장 인력의 급여, 급식비, 숙소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대우건설이 2010. 4. 30.자 변경계약을 전후로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 사건 쟁점비용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0. 8. 3. 및 2010. 10. 5. 원고에게 위 각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특히 2010. 10. 5.자 공문에는 원고에 대하여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공사 지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인력 등에 대한 기회손실비용이 증가하는 등 추가손실이 예상되므로 위 현장 인력 잔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민원 해결 전망과 이 사건 공사 시작 시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마) 대우건설은 원고의 대기 요청에 따라 2011. 6.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적 · 물적 시설을 유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경 원고와 지역 주민과 사이 합의 성립으로 민원이 해결되어 공사 착공이 가능하게 된 후, 2011. 10. 19. 원고와 사이에,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한 추가비용"에 관한 2010. 4. 30.자 변경계약에 따라 2009. 3. 1.부터 2011. 6. 19.까지 공사지연 기간 추가비용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창고의 임대료, 안전관리비, 현장 인력의 급여, 급식비, 숙소운영비, 판관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갑 제16, 19, 20호증)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의 방법으로 산출한 뒤, 판관비 등을 제외하는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2,609,770,000원(그 중 이 사건 물류시설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쟁점비용이다)으로 산정하고, 이를 2012. 7. 24.자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에 편입시켰다.

【인정근거】 갑 제3~6, 13~17, 19,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지

2) 이 사건 쟁점비용이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그 외 위 각 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쟁점비용의 발생 및 정산 경위, 이 사건 쟁점비용의 구성 항목, 2010. 4. 30.자 변경계약 및 2012. 7. 24.자 변경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비용은 원고가 대우건설과 사이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를 위하여 미리 임차한 가설재 임대료, 현장 대기 인력에 대한 급여, 건설장비 임대료 등 인적·물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 추가비용은 공사현장에서 그 실행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그 추가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비용은 이 사건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착공지연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에 따라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급인인 대우건설에 지급한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취득대금 외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거나 제7호 소정의 "제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비용은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쟁점비용을 이 사건 물류시설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홍다선

판사 이승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7-17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